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명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57
----------	------

발의연월일 : 2024. 5. 2.

발 의 자 : 이명녀, 박경흠, 문기호
김도운, 문희성,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안영호

1. 제정이유

스스로 방역이 어려운 방역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방역을 통해 위생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제1조 및 제2조)
- 나.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3조)
- 다. 신청 등 (제4조)
- 라.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위탁(제5조 및 제6조)
- 마. 대장 비치 및 보고 (제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지방자치법」 제13조

5.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4. 4. 17. ~ 4. 23.(6일간)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에 대해 방문방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 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라.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3. “대상주택”이란 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았을 시 지원 대상주택에 대한방문방역을 실시한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 기동반을 둘 수 있다.

제6조(위탁) 구청장은 방문방역에 관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비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 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방문방역신청서(제4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청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주택형태	<input type="checkbox"/>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해당란에 표기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또는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방역희망일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조례 제2조 따른 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 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동의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방문방역 접수 처리대장(제7조 관련)

○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번호	신청 일자	신청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상세하게 기재)	처 리		확인서명 (신청자)
					예정일	완료일	
1							
2							
3							
4							
5							
6							
7							
8							
9							
10							

관 련 법 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
(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 (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방역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에게 방역을 지원하는 사항
으로서 연평균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비용 미만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3. 작성자

- 소 속: 건강관리과
- 직 급: 지방의료기술주사보
- 이 름: 황 미 진
- 연락처: 290-4952